제195회 거창군의회
<임 시 회>

- 가조119안전센터 -
공용건축물 증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(안)

거 창 군

- 가조119안전센터 -
공용건축물 증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(안)

의안 번호	2013 ~

제출연월일	2013. 09. .
제 안 자	거창군수

1. 제안사유

❍ 가조119안전센터 청사는 거창군 소유 토지에 경상남도 소유 건물로 당초 신축시에는 지역대 정원 규모로 건축되었으나 안전센터로의 승격후 근무인원 및 장비의 증가에 따라 거창소방서로부터 청사 증축을 위한 토지사용 승낙요청이 있어

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청사증축을 통해 근무환경개선과 소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토록 토지사용 승낙을 하기 위함

2. 가조119안전센터 운영현황

❍ 가조119안전센터는 2005년도 지역대 정원규모로 신축

❍ 2010년도 안전센터 승격이후 필수공간 협소로 업무수행 애로
※ 2층 옥상에 컨테이너로 임시 공간 활용중

❍ 근무현황

지역대		안전센터		비고
근무인원	근무형태	근무인원	근무형태	
4명	2인 2교대	13명	4인 3교대	의무소방원 2명 별도

❍ 청사현황

- 토지(소유:거창군) : 가조면 마상리 467-6, 1,026㎡
- 건물(소유:경남도) : 철근콘크리트조, 2층, 233.62㎡

❍ 운영현황

- 관할지역 : 3개면(가조면, 가북면, 남하면)/3,669세대, 7,275명
- 면　　적 : 212㎢(거창군 전체의 26.4%)

3. 증축규모 : 130㎡

❍ 1층 : 14㎡(현 175㎡)

❍ 2층 : 116㎡(현 58㎡)

4. 소요예산 : 236백만원(도비)

5. 추진일정

❍ 경남도 공유재산심의회 : '13. 8월

❍ 거창군 협의 및 거창군의회 동의 : '13. 9월

❍ 공사착공 및 준공 : '13. 10월 ~ 12월

6. 관련근거

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: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

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: 영구시설물 축조 조건

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: 사용료의 감면

▣ 증축예정 부지 위치도

황제골든빌라
가조중학교
상마
가조초등학교
가조119
안전센터
가조면
보건지소
가조면사무소
가조제일교회
전원아파트
가조한의원
본모텔시우나
한솔농기계
가조피출소
하나로마트
가산로
가조2교
가조우체국
가조카
부분정비
덕성약국
축산농협

▣ 증축예정 건물사진

[참고자료:관계법령]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13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, 도랑·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. 다만,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**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**가 **직접** 해당 행정재산을 **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**으로 사용하려는 경우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[전문개정,2009.4.24]

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.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

1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**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**이 **공용**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**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**하고 해당 **지방의회가 동의**한 경우